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정	1996. 3. 1	규칙 제 82호
개정	2000. 11. 21	규칙 제247호
	2002. 4. 1	규칙 제302호
	2003. 12. 27	규칙 제352호
	2004. 12. 17	규칙 제394호
	2005. 10. 5	규칙 제442호
	2008. 10. 8	규칙 제566호(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	2010. 3. 15	규칙 제602호
일부개정	2012. 6. 14	규칙 제678호
일부개정	2015. 11. 13	규칙 제810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6. 5	규칙 제875호
일부개정	2018. 4. 12	규칙 제907호
일부개정	2019. 11. 25	규칙 제985호
일부개정	2019. 12. 23	규칙 제989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의 임명 기준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4, 2017. 6. 5>

제2조(임용자격) ① 통장·이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재외국민을 제외한다)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1. 신설 통·리 지역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책임자가 없는 지역

② 삭제 <2012. 6. 14>

제3조(통장·이장의 임명) ① 읍장·면장·동장이 통장·이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실정을 고려한 주민추천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 ② 주민추천방법은 해당 통·리 세대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또는 대동회, 주민총회 등의 추천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 ③ 제2항 중 연서에 따른 추천일 경우에는 후보자는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주민에게 직접 연서를 통해 추천을 받아야 하며, 동일 후보에 대한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7. 6. 5>
 - ④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민추천자 서명부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대동회·주민총회 추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 ⑤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 ⑥ 제5항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은 직권으로 통장·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5>
 - ⑦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통장·이장을 재임명할 경우에도 그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 11. 25>
- [전문개정 2012. 6. 14]
[제목개정 2015. 11. 13]

제4조(복수후보의 결정) ① 읍장·면장·동장은 통장·이장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통장·이장후보자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통장·이장후보자 면접기준표에 따라 면접위원회의 심사를 하고, 그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통장·이장으로 임명하되,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면접기준표 상 점수가 높은 사람을 통장·이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② 면접위원회는 해당 읍장·면장·동장과 해당 읍·면·동의 지역단체장

또는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해당 읍장·면장·동장이 위촉하는 2명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③ 면접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장·면장·동장으로 한다. <신설 2017. 6. 5, 2019. 11. 25>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면접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에 해촉(解囑)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6. 5, 개정 2019. 11. 25>

⑤ 각 후보자별 면접심사 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개정 2017. 6. 5>

⑥ 심사 및 면접에서 논의된 내용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제5조(임기) ① 통장·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② 통장·이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6항에 따라 임명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4,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③ 삭제 <2017. 6. 5>

제6조(통장·이장의 해임) ① 통장·이장이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읍장·면장·동장은 통장·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면장·동장은 해임 사실 및 그 사유를 해당 통장·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4,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1.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외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2.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통·리의 구역이 변경된 때
3. 임기 중 사망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해당 통·리 이외의 지역으로 진출하였을 때
4. 주민 불친절, 품위손상 등으로 해당 통·리 세대 2분의 1 이상의 불신

임을 얻은 때

- 5.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때
 - 6. 읍장·면장·동장이 소집하는 월례 정기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하거나, 읍·면·동 행정에 불성실할 때
 - 7.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를 위배한 때
 - 8.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등으로 행정수행의 차질을 초래하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 9. 그 밖에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하기에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 ② 직권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부터 5년간 통장·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5. 11. 13, 2019. 11. 25>

[제목개정 2015. 11. 13]

제7조(임명장 교부 등) ① 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이장 임명(해임) 대장을 작성하며, 통장·이장 현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2019. 11. 25>

② 삭제 <2017. 6. 5>

③ 읍장·면장·동장은 통장·이장 임명 후 읍·면·동 게시판 및 용인시 홈페이지에 임명자 명단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7. 6. 5>

제8조(신분증 발급 등) ① 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장·이장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제작·발급할 수 있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이장 신분증 발급(회수)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은 통장·이장이 사직하거나 해임될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대장에 회수일자 및 회수사유를 기록하고 신분증을 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14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3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5 규칙 제8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2 규칙 제9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25 규칙 제9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장·이장의 임명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통장·이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장·이장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명된 통장·이장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칙 <2019. 12. 23 규칙 제98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3호 및 제9호다목 중 “○○읍사무소·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생략

[별표 1] <개정 2019. 11. 25>

통장·이장후보자 심사기준표(제4조 관련)

심사대상자(읍·면·동 제 통·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택)
주소							휴대폰)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항목 (비율)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인정조건 등)
1. 해당 통·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 상 거주기간 (20%)	8년 이상	20		·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6년 이상~8년 미만	18		
	4년 이상~6년 미만	16		
	2년 이상~4년 미만	14		
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15%)	50시간 이상	15		· 자원봉사포털(1365), 사회복지자원봉사인 증관리(vms)에서 발 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 그 밖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3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13		
	1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12		
	10시간 미만	10		
	봉사활동 경력 무	8		
3. 통장·이장 활동 집중도 (10%)	겸직 없음	10		
	자영업	7		
	그 밖의 사항	4		
4. 행정기관 상훈 (10%)	장관 이상	10		· 본인 증명자료 제시 ※ 공공기관 상훈에 한정 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
	도 단위	8		
	시 단위 이하	6		
	포상경력 무	4		
5. 면접 (45%)		45		
총계		100		
확인자(읍장·면장·동장)		직급	성명	(인)

[별표 2] <개정 2019. 11. 25>

통장·이장후보자 면접기준표(제4조 관련)

면접대상자 (읍·면·동 제 통·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소							휴대폰)

면접기준

심사 항목(점수)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인정조건 등)
1. 국가관 및 지원 동기(10점)	우수	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보통	5		
	다소 미흡	0~4		
2. 지역관심도(10점)	우수	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현황 인지도
	보통	5		
	다소 미흡	0~4		
3. 통장·이장의 임무 및 사명감(15점)	우수	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이장의 임무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보통	8		
	다소 미흡	0~8		
4. 인품, 태도 등(10점)	우수	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보통	5		
	다소 미흡	0~4		
총계		45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심사 항목에 따라 읍·면·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가능함.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23>

○○○읍·면·동 제20 - 호

통장·이장 모집 공고

(제3조제1항 관련)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구 ○○○읍·면·동 통장·이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용인시 ○○구 ○○○읍장·면장·동장

<p>1. 모집대상 : ○○통·리, ○○통·리, ……</p> <p>2. 접수기간 : 20 . . . ~ . . . (일간) ※ 접수기간은 읍·면·동 근무 시간 내 (09:00 ~ 18:00)</p> <p>3. 접수장소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p> <p>4.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재외국민 제외) 나.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p> <p>5. 신청 및 추천방법 가. 통장·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주민추천방법(택 1) ○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세대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 반드시 본인 도장으로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하고, 동일 후보에 대한 추천은 세대별 1명에 한정하며, 연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함. ○ 주민총회, 대동회 등의 추천</p> <p>6. 선발방법 ○ 주민추천을 받은 후보자 ※ 복수추천(후보자) 발생의 경우 통장·이장 임명 심사기준표에 따라 선정 ○ 선발 결과 개별 통지</p>	<p>7. 제출서류 가. 통장·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나. 주민추천자 서명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대동회·주민총회 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 다.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서식] 라. 그 밖에 사회봉사활동 실적서, 상훈 등 증명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는 읍·면·동 민원실 비치 및 읍·면·동 홈페이지 공지사항 붙임 파일 다운로드</p> <p>8. 통장·이장의 임무 ○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 가. 읍장·면장·동장의 업무 지원 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라.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바.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 사. 주민등록 거주 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아.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자.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차.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와 읍·면·동 행정 지원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p> <p>9.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함. 다. 그 밖에 문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로 하시기 바랍니다.</p>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5>

통장·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제3조제4항 관련)

지원 대상	용인시 ○○구 ()읍·면·동 제()통장·이장				
사 진 (3.5×4.5cm)	성 명	(한글) (한자)	생년 월일	19 . . . (연령 만 세)	성별 남·여
	주 소		거주 기간	. . . ~ 현재(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리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택(사무실)	이메일	@	
	직 업	(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비고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센터에 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봉사활동 장소	활동시간		활동내용	비고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훈격 (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비고
체납·형벌 내용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통장·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인시 ○○구 읍장·면장·동장 귀하

※ 붙임서류: [전체 해당] 자기소개서(본인작성), [해당자에 한정함] 자원봉사실적 확인서(자원봉사센터 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5>

자기소개서(제3조제4항 관련)

지원대상	용인시 ○○구 ()읍·면·동 제 ()통장·이장		
성명		주소	
<input type="checkbox"/>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점·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별지 제4호의2서식] <중전 별지 제3호서식에서 이동 2019. 11. 25>

주민추천자 서명부(제3조제4항 관련)

○ 통장·이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상기인을 ○○읍·면·동 ○○통장·이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연번	성명	주소	날인(서명)	추천일

-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동일 세대원은 동일 후보를 중복 추천할 수 없습니다.
- ※ 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사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4호의3서식] <중전 별지 제8호서식에서 이동 2019. 11. 25>

대동회·주민총회 추천서(제3조제4항 관련)

○ 통장·이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상기인을 ○○읍·면·동 ○○통장·이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 천 일 :

○ 추천인 명단(대동회 참석자 명단)

연번	성명	주소	날인(서명)	비고

-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회의록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사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11. 13>

(제7조제1항 관련)

제 호

임명장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임 기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귀하를 『용인시 통장·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에 따라 00읍·면·동 00통장·이장으로 임명합니다.

20 년 월 일

용인시 00구 00읍장·면장·동장 (직인)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6. 5>

통장·이장 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7조제2항 관련)

(앞면)

통장·이장 신분증
사 진
성 명
용인시 ○구 ○○읍·면·동

(뒷면)

소속 : 용인시 ○○구 ○○읍·면·동
통·리 명 :
성 명 :
생년월일 :
발급번호 :
위 사람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용인시 ○○구 읍·면· 동 제 통장·이장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용인시 ○○구 ○○읍장·면장·동장(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 가로 54mm × 세로 86mm

사진 : 가로 30mm × 세로 40mm

글씨체 : 휴먼명조체(검정 글씨)

재 질 : 플라스틱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7. 6. 5>

통장·이장 신분증 발급(회수) 대장(제8조제2항 관련)

[○○○읍·면·동]

발급 번호	발급 일자	발급구분 (신규,재발급)	임기	발 급 대 상 자				사 진	회수일자 (사 유)
				통리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 읍·면·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